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(신입) 공개채용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2. 18.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채용 분야·인원 및 주요업무

직군	직급	분야	채용인원	주요업무
계			26	
행정	6급	건축	4	◦ 주택건설 사업 및 삼다수 공장 시설 관리 등
생산	7급갑	환경관리	1	◦ 환경관리(폐기물 등) 업무 전반
	7급을	제품생산	15	◦ 제품생산 현장 근무
연구	6급	이화학	2	◦ 이화학분야 관련 수질분석 등
		미생물	2	◦ 미생물분야 관련 수질분석 등
특수직	경비직	경비	2	◦ 삼다수(감귤) 공장 시설물 보안관리 등

2. 자격요건

○ 전 분야 공통 요건

-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- 제주특별자치도민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, 연구직군 제외)
 -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 -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(예정)자
-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분 (인성 / 창조성 / 전문성 / Globality)
-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6급인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군복무중인 자는 임용예정일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

○ 추가 자격요건 <다음 중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>

직군	직급	분야	자격요건 (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)
행정	6급	건축	◦ 건축(건축, 실내건축) 관련 기사 이상 소지자
생산	7급갑	환경관리	◦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
	7급을	제품생산	◦ 추가 자격요건 없음
연구	6급	이화학	◦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,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 (전문대학 5년 이상) 이화학 분야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환경측정분석사(수질환경 분야) 자격이 있는 자
		미생물	◦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 관련 과목이 개설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,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3년 이상(전문대학 5년 이상) 미생물 분야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환경측정분석사(수질환경 분야) 자격이 있는 자
특수직	경비직	경비	◦ 추가 자격요건 없음

※ 추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격요건 확인 시 부적격 처리 됨

3. 가점 및 문제 출제 수준

【가점】 (※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자에 한함)

구분	대상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	가점
공통	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	전형단계별 만점의 5~10%
	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내지 제2호에 의한 자 - 다문화 가정 / 북한이탈주민	적성검사에 한해 만점의 5% (6급인 경우 직무수행능력test 총점에 대한 만점의 5%)
생산직군	- 제품생산 관련 기사 자격증 (별첨 참조)	적성검사에 한해 만점의 3% (6급인 경우 직무수행능력test 총점에 대한 만점의 3%)

※ 모든 가점은 만점의 60% 이상 득점 시 반영하되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40%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

(단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인 경우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)

※ 가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(중복 적용 불가) 단,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가 제품생산 관련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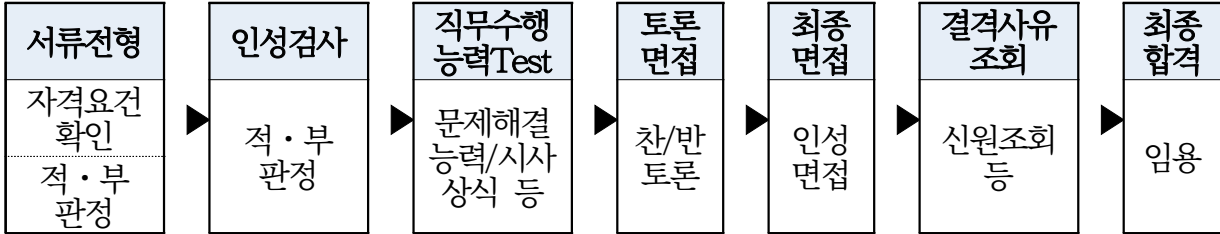
【문제출제수준】

◦ 6급: 대졸 졸업 수준, ◦ 7급갑: 초대졸 졸업 수준 ◦ 7급을: 고등학교 졸업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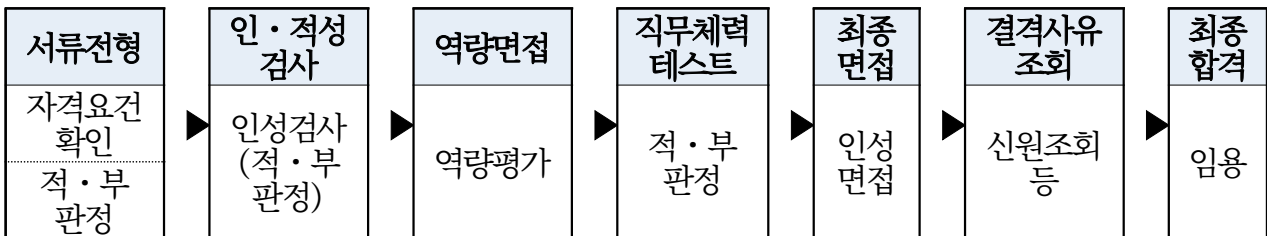
4. 전형절차 <※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>

□ 전형진행 절차

○ 6급



○ 생산직군, 특수(경비직)



※ 경비직인 경우 직무체력테스트 전형 제외

□ 전형별 배수 선발 기준

채용예정 인원	합격배수				
	서류전형	인성검사	적성검사/ 직무수행능력Test	토론/역량 면접	최종면접
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	적격자 전원	적격자 전원	5배수이내	3배수이내	1배수
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	적격자 전원	적격자 전원	3배수이내	2배수이내	1배수

※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, 임용등록포기 및 퇴직자 결원 충원을 위하여 최종면접 결과 7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운영

□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

- 서류전형(자격요건 확인): 적·부 판정
 - 판정기준: 지원분야 자격 적격인 자

◦ **인성검사: 적·부 판정**

- 판정기준: 성격유형 및 부적응위험도 모두 적격인 자

성격 유형		부적응 위험도	
A 등급	적격	양호	적격
B 등급			
C 등급		주의	
M 등급			
X 등급			
D 등급	부적격	위험	부적격
R 등급			
E 등급			

◦ **적성검사 {6급인 경우 직무수행능력Test}**

- 합격기준: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

- 검사항목: 언어영역, 수리영역, 추리영역, 공간지각능력

* 직무수행능력Test: 적성검사 항목 + 시사상식, 문제해결능력

◦ **직무체력테스트: 적·부 판정**

- 판정기준: 총 5종목 중 3종목 이상 1점 획득 시 부적격 처리

- 측정항목: 악령, 배근력,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, 윗몸 일으키기, 10m 왕복 달리기

◦ **토론면접**

-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

- 평가기준: 논리적 사고, 설득력, 적극성, 배려적 의사소통

◦ **역량면접**

-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

- 평가기준: 적합성(조직, 직무, 동기), 신(身), 언(言), 서(書), 판(判)

5. 최종합격자 선정

○ 최종 면접전형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- 평가기준: 공사인으로서의 사고와 자세, 청렴도 및 신뢰도, 책임감 및 적극성, 협업성 및 희생정신, 용모·예의·품행 등

○ 최종 면접전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

- ①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순
- ② 토론 / 역량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

6. 공고 및 원서접수

- 공고기간: 2019. 12. 18. ~ '20. 1. 7.
- 접수기간: 2019. 12. 18. ~ '20. 1. 7. 18시까지
- 접수방법: 온라인(www.jpdc.co.kr) 접수

7. 접수서류

-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1차면접 등록 시 제출
-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
- 전형별 제출서류

<필수 제출서류 _ 전원>

구분		제출서류	비고
제주 도민	본인 제주도 거주	◦ 주민등록초본 1부 {주소이전 이력 및 병역사항(남자) 포함}	택 1
	부모 중 1인 제주도 거주	◦ 주민등록초본 1부 (제주도 거주 부모 중 1인) ◦ 가족관계증명서 1부.	
	제주도내 학교 졸업(예정)	◦ 제주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 *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	

- ※ 연구직군인 경우 제주도민 증빙서류 미제출 (단, 연구직군 지원자가 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포함) 제출

<추가 제출서류 _ 해당자에 한함>

응시분야	제출서류	비고
행정6급(건축)	◦ 건축(건축, 실내건축)기사 이상 자격증	
연구6급(이화학)	◦ 졸업(예정)증명서, 경력증명서, 국민연금(건강보험)가입증명서 ◦ 자격증 사본	택 1
연구6급(미생물)	◦ 졸업(예정)증명서, 경력증명서, 국민연금(건강보험)가입증명서 ◦ 자격증 사본	택 1
	◦ 미생물 관련 과목 개설 확인서	필수
생산7급(환경관리)	◦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사본	

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(12/18)까지 취득분에 한함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 제출 시 반드시 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**

8. 기타 유의사항

-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.
- 지원서 기재 착오·누락, 첨부파일 등록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모집기간 내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
- 생산직군 제품생산 분야인 경우 4조 교대제 운영에 따른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(예, A조 : 09 ~ 18시, B조 : 15 ~ 24시, C조 : 24 ~ 09시, D조 : 휴무)

- 경비직인 경우 교대제 운영에 따른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-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,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.
-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인·적성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-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수습 후 발령 시 분야 및 직군 변경 가능
- 수습임용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, 수습기간 내 공사에서 지정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, 직무수행 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생산직군 제품생산 분야인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, 먹는물 관리법 제29조 등에 의거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근무 불가능한 질병

- 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(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), 파라티푸스,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, 소화기계통 전염병, A형 간염, 살모넬라, 쉬겔라, E형 간염
- 최종합격자가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, 임용등록포기 및 퇴직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
-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“채용문의”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(☎ 064-780-3514)으로 문의

※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9. 전형일정
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공고 및 접수	12. 18.(수) ~ '20. 1. 7.(화)	공고 20일 이상
인·적성검사 (직무수행능력Test 병행)	'20. 1. 12.(일)	
인·적성검사 발표	'20. 1. 16.(목)	
직무체력테스트	'20. 1. 18.(토)	
직무체력테스트 합격자 발표	'20. 1. 21.(화)	
토론/역량면접	'20. 2. 1.(토)	
토론/역량면접 결과발표	'20. 2. 4.(화)	
최종면접	'20. 2. 8.(토)	
합격예비자 발표	'20. 2. 11.(화)	
임용 등록	'20. 2. 11.(화) ~ 2. 19.(수)	
결격사유 조회	'20. 2. 20. ~ 2. 28.(금)	
임용	'20. 3. 2.(월)	

※ 결격사유 조회: 신원조회, 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으로, **응시자 및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매 전형 일정 공고 시 확정·게시함**

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의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,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